

의안번호	2214946
의 퇴 인	최혁진의원
회 답 일	2025.12.8.
추 계 번호	25D667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27년 175만원씩 총 35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연평균
회의참석수당 (안 제32조의4)	추가재정소요	1.75	1.75	3.5	1.75

주: 본 추계는 대법원 소관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의4(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의 법관 인선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소속으로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제2항) 1. 전국 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4명 2.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4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추천위원회는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전담재판부 법관으로 임명하거나 지정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32조의5(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	전담재판부의 재판 과정에 대한 녹화, 촬영 및 증제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2조의4(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	-
2	안 제32조의5(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	- (미대상)	현행 예산 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2026년 예산에 421백만원 추가 반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안 제32조의4에 따른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회의참석수당에 한정하여 추계 하며, 그 외의 비용은 고려하지 아니함
- 본 추계에서 추천위원회의 추가재정소요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 추천위원회 회의는 2회(1심 3개 재판부 /항소심 3개 재판부) 개최되고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35만원으로 가정함
 - 추천위원회는 안 제32조의4¹⁾에 따라 전국 법관회의 추천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명, 법무부 추천 1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5명)이 회의 참석수당 지급대상으로 가정함
 -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1심과 항소심 간의 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2026년 1회, 2027년 1회 등 총 2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2조의4(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①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의 법관 인선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소속으로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 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국 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4명
2.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4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③ 추천위원회는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전담재판부 법관으로 임명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대법원의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²⁾,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회의참석 1회당 3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과 2027년 175만원씩 총 35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6~2027년

(단위: 명, 회, 백만원)

구분		2026	2027	합계	연평균
회의참석수당 (안 제32조의4)	민간위원	5	5	—	—
	회의횟수	1	1	—	—
	회의참석수당	0.35	0.35	—	—
	추가재정소요	1.75	1.75	3.5	1.75

주: 본 추계는 대법원 소관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과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참석수당) 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전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② · ③ (생략)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대법원 소관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